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8 |
|----------|---|

제출연월일 2006. 1. 11
제출자 사천시장

1. 의결주문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 사천시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나. 위원회 위원수 및 위원장 등 정비(안 제2조)

- 위원수 : 10인이내 ⇒ 15인이내
- 위원장 : 지역개발국장 ⇒ 부시장
- 특별위원 : 당해 공원지역 읍·면·동장 ⇒ 당해 공원구역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 위원의 임기를 1회 연임가능토록 함(안 제3조)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 라.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2) 입법예고(2005. 12. 13 ~ 12. 31)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제1조중 “자연공원법” 을 “「자연공원법」” 으로 하고,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 를 “사천시시립공원위원회” 로 한다.

제2조제1항중 “10인” 을 “15인” 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지역개발국장” 을 “부시장” 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5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천시청에 근무하는 5급이상 부서장급과 시립공원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등 이해관계인과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조중 “한다” 를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 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립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시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명 : <u>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u></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u>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u>10인</u>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u>지역개발국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농정과장, 녹지공원과장, 건설과장은 <u>당연직</u>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④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p> <p>1. <u>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u></p> <p>2. (생략)</p> <p>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신설></p> | <p>제명 : <u>사천시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u></p> <p>제1조 (----)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의 ----- <u>사천시시립공원위원회(이하</u> ----- -----</p> <p>제2조 (----) ① ----- -----<u>15인</u>----- -----</p> <p>② ----- <u>부시장</u>----- -----</p> <p>③ <u>사천시청에 근무하는 5급이상 부서장급과 시립공원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등 이해관계인과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u></p> <p>④ -----</p> <p>1. <u>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u></p> <p>2. (현행과 같음)</p> <p>⑤ ----- ----- <u>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 (임기) 제2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u>한</u> <u>다</u>.</p> <p>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u>사</u> <u>고</u> <u>가</u> <u>있</u> <u>을</u> <u>때</u> <u>에</u> <u>는</u> <u>그</u> <u>직</u> <u>무</u> <u>를</u> <u>대</u> <u>행</u> <u>한</u> <u>다</u>.</p> <p>제5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u>사</u> <u>항</u> <u>에</u> <u>관</u> <u>하</u> <u>여</u> <u>심</u> <u>의</u> <u>한</u> <u>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군</u> <u>립</u> <u>공</u> <u>원</u> <u>계</u> <u>획</u> <u>의</u> <u>결</u> <u>정</u> 2. <u>공</u> <u>원</u> <u>구</u> <u>역</u> <u>및</u> <u>공</u> <u>원</u> <u>계</u> <u>획</u> <u>의</u> <u>변</u> <u>경</u> 3. <u>공</u> <u>원</u> <u>보</u> <u>호</u> <u>구</u> <u>역</u> <u>의</u> <u>지</u> <u>정</u> 4. <u>공</u> <u>원</u> <u>의</u> <u>유</u> <u>지</u> <u>관</u> <u>리</u> <u>에</u> <u>관</u> <u>한</u> <u>사</u> <u>항</u> | <p>제3조 (---) ----- ----- <u>하</u> <u>며</u> <u>1</u> <u>회</u> <u>에</u> <u>한</u> <u>하</u> <u>여</u> <u>연</u> <u>임</u> <u>할</u> <u>수</u> <u>있</u> <u>다</u>.</p> <p>제4조 (-----) ① (생략) ② ----- <u>부</u> <u>득</u> <u>이</u> <u>한</u> <u>사</u> <u>유</u> <u>로</u> <u>직</u> <u>무</u> <u>를</u> <u>수</u> <u>행</u> <u>할</u> <u>수</u> <u>없</u> <u>을</u> <u>때</u> -----</p> <p>제5조 (-----) ① ----- <u>각</u> <u>호</u> <u>의</u> <u>사</u> <u>항</u> <u>을</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u> <u>립</u> <u>공</u> <u>원</u> <u>의</u> <u>지</u> <u>정</u> <u>·</u> <u>폐</u> <u>지</u> <u>및</u> <u>구</u> <u>역</u> <u>변</u> <u>경</u> <u>에</u> <u>관</u> <u>한</u> <u>사</u> <u>항</u> 2. <u>공</u> <u>원</u> <u>계</u> <u>획</u> <u>의</u> <u>결</u> <u>정</u> <u>·</u> <u>변</u> <u>경</u> <u>에</u> <u>관</u> <u>한</u> <u>사</u> <u>항</u> 3. <u>시</u> <u>립</u> <u>공</u> <u>원</u> <u>의</u> <u>환</u> <u>경</u> <u>에</u> <u>중</u> <u>대</u> <u>한</u> <u>영</u> <u>향</u> <u>을</u> <u>미</u> <u>치</u> <u>는</u> <u>사</u> <u>업</u> <u>에</u> <u>관</u> <u>한</u> <u>사</u> <u>항</u> 4. <u>그</u> <u>밖</u> <u>의</u> <u>시</u> <u>립</u> <u>공</u> <u>원</u> <u>의</u> <u>관</u> <u>리</u> <u>에</u> <u>관</u> <u>한</u> <u>중</u> <u>요</u> <u>사</u> <u>항</u> |

관 련 법 령 발 취

[자연공원법]

제9조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 시·도에 도립공원위원회,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두며,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3.31>

②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3.31>

1. 자연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에 한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자연공원법시행령]

제5조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1.재정경제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

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의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3.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4.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④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

2. 그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⑤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05.9.30>

⑥제3항제4호·제5호의 위원 및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6조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9.30>

1.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 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 나.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 다.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특별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가 된다.
 - 가.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군수"라 한다)
 - 나.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 다.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 제2호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호나목·다목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도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에 준용한다.

제8조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9.30>

1.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 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 나.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 다.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특별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가 된다.
- 가. 삭제 <2003.4.4>
 - 나.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 다.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4.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특별위원의 임기, 간사, 군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립공원위원회에 준용한다.